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망자 발생 건설사고의 건설사업자 명단 등 공표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1662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정부 제출(제221166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등의 공개 등 (안 제67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	2

I. 정부 제출(제2211662호)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5. 7. 23.

다. 회 부 일 : 2025. 7.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검토의견

가. 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등의 공개 등 (안 제67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등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실적, 안전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사업자명 2. 건설공사명 3. 건설공사 현장 소재지 4. 사망자 수 5. 그 밖에 사고발생 일시, 사고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67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등의 공개에 대하여 2026

현행	개정안
	<u>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개정안 제67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실적, 안전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건설공사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¹⁾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명칭 등을 공표²⁾하는 입법례로는

1)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개정안 제67조의2 단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2) ‘공표’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을 말함. 이전에는 공표를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 훼손의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제재적 성격의 공표)으로 이해하였으나, 최근 행정의 적극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국민에게 행정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정보제공적 성격의 공표)도 공표의 일종으로 보고 있음. 한편 공표 중에서는 의무위반에 관한 사실이나 행정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가 아닌 특정한 사실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표가 있는데, 이는 국민의 바람직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함.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5. pp.434.-436.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및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등이 있음.

동 공표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³⁾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사례 및 양식】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① 2023.1.1.~2023.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② 2023.1.1.~2023.12.31. 기간 중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2023.1.1.~2023.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2023.1.1.~2023.12.31.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최근 3년 이내(2021.1.1.~2023.12.31.)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⑥ 2023.1.1.~2023.12.31.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사업장 중에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과 2023년 공표 시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가 확정된 사업장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1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23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1개소)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망자 수(명)
수제품및기타제품 제조업	50인 미만	○○○○○○○	○○○○○○○	2

○ '22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3개소)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망자 수(명)
건설업	50인 미만	○○○○○○○ (△△△△△△△)	○○○○○○○	2
건설업	50인 미만	○○○○○○○ (△△△△△△△)	○○○○○○○	2
시설관리및사업 지원서비스업	50인 미만	○○○○○○○	○○○○○○○	2

※자료: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90호, 2024.12.19.)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4)는 동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⁵⁾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사례 및 양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4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공표제목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중대산업재해 발생 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 건설 형 확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신축공사	○○○○년 ○○월 ○○일 ○○시경	○○○○	사망 1명	-내용: -원인:	○○○○

※자료: 2024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5호, 2025.4.16.)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도 2019년 5월부터 건설사 및 발주청 등의 안전에 대한 책임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시공 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 등6)을

6) 분기별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주청별 사망 사고 발생 현황, 인·허가 기관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공개하였음.

공개해 왔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불이익한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23년 3분기⁷⁾ 후에는 공개를 중단한 바 있음.

한편,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의 전체 산업 및 건설산업의 사고 사망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건설산업의 연간 사고사망자 수는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의 39.7~51.9%이고,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산업이 전체 산업의 3.74~4.35배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2020~2024년) 전체 산업 및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자 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산업(명)	882	828	874	812	827
건설산업(명)	485	428	458	417	402
건설산업 비중(%)	51.9	50.4	46.0	43.8	39.7

※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5년(2020~2024년) 전체 산업 및 건설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산업(명)	0.46	0.43	0.43	0.39	0.39
건설산업(명)	2.00	1.75	1.61	1.59	1.57
전체 산업 대비 건설산업 비율(배)	4.35	4.07	3.74	4.08	4.03

※자료: 국토교통부

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3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 100대 건설사 현장 (19곳)에서 사망자 20명 발생…전년 동기 2명 ↑, -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공공공사 현장 특별점검…엄중 처분”, 2023.10.30.

개정안은 건설산업이 타 산업에 비하여 사고사망자 수가 많고, 사고 사망만인율이 현저히 높은 현실과 과거 국토교통부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가 법적 근거가 없어 중단된 점을 고려하여, 「건설 기술 진흥법」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공개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명칭 등 공표 외에 건설산업과 관련된 별도의 공개 제도를 마련·시행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성을 제고 하고 이를 통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 등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84조의2⁸⁾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⁹⁾에 따라 개정안 제67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 건설

8) 개정안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67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등의 공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의 공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¹⁰⁾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반영한 사항으로 보임.¹¹⁾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11) 규제의 재검토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외에 제8조의2에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규제의 재검토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들은 대부분 「행정규제기본법」의 근거 조항까지 인용하지는 않고 있음.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키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공사명 등을 공개하여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하여 전 산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발생 업체 명단을 공표하고 있음에도 건설산업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공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산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표는 법 위반이 확인되어 형이 확정¹²⁾¹³⁾된 기업만을 공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1조(규제의 재검토) ① 정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12조 제2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30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제38조제4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 4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468개 사업장 명단 공표”
-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사고 원인에 대한 법 위반 등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사망사고 발생 업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단 공개가 사망사고 감소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유독 건설산업에 엄격하고 가혹한 사회적 분위기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91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